

#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313
----------	------

2018년 2월 23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문영민의원 외 9명
- 나. 발 의 일 : 2017년 12월 18일
- 다. 회 부 일 : 2017년 12월 20일
- 라. 상 정 일 : 제27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18년 2월 23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영민 의원)

### 가. 제안 이유

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,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변경함(안 제6조).
-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변경함(안 제7조제3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정부조직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입법예고 (2017. 12. 26. ~ 2018. 1. 6) 결과 : 의견 없음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,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변경하는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2017. 7. 20.)됨에 따라 관련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(안 제6조, 안 제7조제3항)하고, 기타 알기 쉬운 용어 정비를 통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1조).
  - ※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입법 취지: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.
- 안 제6조 및 제7조제3항은 조례의 내용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법령(「정부조직법」)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, 자치단체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동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뒤늦게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개정조례안」이 제출(2018. 2. 6)되어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바, 본 개정안과 같이 각 조례별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일괄하여 개정되도록 하는 서울시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- 안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은 “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”로 하고, “1회에 한하여”는 “한 번만”으로 정비하여 기관 명칭의 올바른 용어와 좀더 정확한 법령 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.

- 결론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 상호간에는 규범 구조나 규범 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령체계의 정합성 요청에도 부합하고, 어떤 정책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때에는 그 정책의지 및 입법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, 정확한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법적 효과 등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**

**6. 토론요지 : 없음.**

**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**(재석위원 6명, 전원찬성).

**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**

**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**

#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영민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31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2월 18일

발 의 자 : 문영민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송재형, 이순자, 유광상, 김인호,  
황준환, 김상훈, 김용석(도봉),  
최관술, 김희걸 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,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변경함(안 제6조)

나.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변경함(안 제7조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정부조직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전단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 중 “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번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개인정보파일 등록)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 운용현황을 <u>행정자치부</u>에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	<p>제6조(개인정보파일 등록) ----- ----- ----- <u>행정안전부</u>----- ----- . ----- ----- . -----</p>
<p>제7조(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) ①·② (생략) ③ 시장은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,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<u>행정자치부장관</u> 또는 전문기관(한국인터넷진흥원)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행정안전부장관</u> ----- ----- . -----</p>
<p>제1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  ② 위원 가운데 2명은 행정1부시장 및 제5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,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. 위원을 위촉할 경우 여성 3명과</p>	<p>제1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. ----- -----</p>

장애인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.

1.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

2.·3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 
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 
다.

⑤ (생략)

-----.

1. 서울특별시의회----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 한 번만 -----

-.

⑤ (현행과 같음)